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2022. 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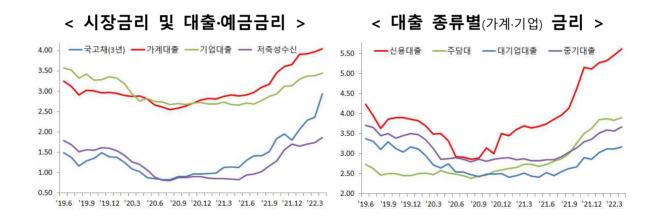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4
1. 금리정보 공시 개선5
2.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8
3.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10
III. 향후 계획 ······13
(참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산정체계14

l. 추진 배경

□ '21년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
 - * 국고채(3년): ('21.6월) 1.30% → ('21.12월) 1.80% → ('22.5월) 3.02%
-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금리상승폭: 가계>예금>기업)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
 - ※ 은행들이 기업대출에는 완화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에 기인 기업대출 신규취급 비중: ('20.3Q) 63.0% → ('21.3Q) 69.9% → ('21.4Q) 73.5%



□ 가계대출금리 상슝으로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포괄하는 대출평균 기준 예대 금리차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 가계대출금리(주담대, 신용대출 등)가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가계** 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
 - * '22년초 현저히 확대되었으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유연하게 하면서 2월 이후 안정세 ('21.12월) 1.96%p → ('22.1월) 2.26%p → (2월) 2.23%p → (4월) 2.18%p → (5월) 2.12%p

<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

(단위: %, %p)

7 8	140.40	140.42 120.42		'21년		'22년				′15.1~
구 분	'19.12	'20.12	6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2.5 평균
대출평균 금리	3.22	2.74	2.77	3.25	3.45	3.51	3.50	3.57	3.68	3.32
가계대출 금리	2.98	2.79	2.92	3.66	3.91	3.93	3.98	4.05	4.14	3.26
저축성수신 금리	1.60	0.90	0.94	1.70	1.65	1.70	1.74	1.87	2.02	1.51
평균 예대금리차	1.62	1.84	1.83	1.55	1.80	1.81	1.76	1.70	1.66	1.81
가계 예대금리차	1.38	1.89	1.98	1.96	2.26	2.23	2.24	2.18	2.12	1.75

^{*} 대출 및 예금금리와 예대금리차 수치는 모두 신규취급액 기준

< 대출평균 기준 예대금리차 >

< 가계부문 예대금리차 >





□ 금리정보 공시 확대 및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필요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으나, 소비자에 대한 금리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 ('19년) 대출 모범규준 개정 및 새로운 기준금리인 신잔액COFIX 도입 ('21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요구가 증가
- ⇒ ①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 ② 금리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며,
 - ③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 주요국과의 예대금리차·순이자마진 비교 >

- ◇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
- □ (예대금리차) 우리나라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낮은 편
 -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예대율 규제* 등으로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으로 추정
 - * (예대율 규제)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 →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사한 규모의 수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수신 부문에서도 금리경쟁 발생

< 최근 5개년 주요국 예대금리차 비교(%p)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싱가포르	5.14	5.17	5.05	5.07	5.13	5.11
홍콩	4.99	5.00	4.97	4.94	4.98	4.98
스위스	2.90	2.94	2.98	3.02	3.06	2.98
노르웨이	2.29	2.20	2.31	2.10	2.00	2.18
한국	2.19	2.06	1.83	1.92	2.04	2.01
헝가리	1.36	1.41	1.69	1.49	2.00	1.59

- ※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산출 기준) Interest rate spread* = Lending rate - Deposit rate
 - * 국가별 금리 기준은 일부 상이 (한국: 全은행 대출 평균금리, 홍콩: HSBC 인용 대출금리, 싱가포르: 10개 주요은행 대출 평균금리)
- □ (순이자마진) 국내은행의 NIM('21년 1.45%)은 미국은행(2.52%)보다 낮고, 유럽은행(1.26%)과 비슷
 - * Net Interest Margin(NIM): 예대금리차에 더해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괄 → 대출 후 매각·유동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비교시 NIM 활용

< 국내, 미국, 유럽은행 NIM 비교 > < 국내은행 예대금리차와 NIM 추이 >



II.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금리정보공시 개선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 🚹 ု 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대출금리 공시 개선
 - 예금금리 공시 개선



추진 과제

금리산정체계의합리성및투명성제고

- 🤈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 이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간경쟁촉진및소비자권익보호

- 오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규제 샌드박스)
 - 개인신용평가 설명 및 안내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1

금리정보 공시 개선

1.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 (현황 및 문제점) 개별 은행이 은행법(§43의3)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중(매 분기)
 - * 경영실적(수익성·유동성 등),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은행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시
 - 은행이 **개별적으로 공시**하므로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 (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 은행간 금리비교를 위해서는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여 확인 필요
- □ (개선방안)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
 - * 경영공시는 은행의 수익성 관련 정보제공이 목적 → 잔액 기준으로 산출
 - ※ 예대금리차 = 평균 대출금리 저축성수신금리(한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 동일)
 - 평균 대출금리: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CD·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제외)
 - ^①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②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
 -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 확인 목적
 -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 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
 - ※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인뱅 22.6%>기타은행 16개사 15.1%)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수치 및 **평균 신용점수**(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으면 평균 신용점수가 낮아짐)도 함께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

2. 대출금리 공시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 (신규취급액 기준)를 비교공시중*
 - * (가계) 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중소기업) 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하여,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곤란*
 - *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 □ (개선방안)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
 - ※ 타 업권 대비 **高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 **50점 단위**로 공시(총 9단계)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권 등은 100점 단위로 대출금리 공시중)

은형	뱅별 자치	네 신용	등급(5단	<u>ŀ</u> 계)				
1~2 3~4 5~6 7~8 9~10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신용평가사 신용점수*(9단계)									
→	1000~ 951	950~ 901	중략	650~ 601	600 이하					

^{*} 신용평가사(KCB) 기준 상위 40%가 900점 이상, 상위 90%가 600점 이상

3. 예금금리 공시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현재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를 공시중
 -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움*
 - * 일부 은행은 최고우대금리는 높으나 우대금리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금리는 타 은행대비 낮음
- □ (개선방안)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
 - * (현행)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 (개선)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 < 금리정보 공시 개편안 요약 > -

1. 예금금리

< 현 행 >

< 개 선 >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ᅄ	## 200		최고우대금리	전월
⊏ 8	6 百 6	12개월	12개월	= 6	6 百 6	12개월	12개월	평균금리 (12개월)
00	정예금	0.90	1.80	$\overline{\infty}$	정기예금	0.90	1.80	1.10
ΔΔ	정예금	1.30	1.75	\triangle	정기예금	1.30	1.75	1.50

2. 대출금리 및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 현 행 >

O 호비	7 H	신용등급별 금리									
은행	구분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평균금리				
00	대출금리	3.69	5.26	8.20	10.17	10.50	4.57				
$\Delta\Delta$	대출금리	3.74	4.84	6.72	9.66	11.00	5.10				

< 개 선 >

			신용점수별 금리							
은행	구분	1000~ 951	950~ 901	중략	650~ 601	600 이하	평균금리	평균 신용점수		
	대출금리	3.70	3.95		8.92	10.93	4.57	930점		
00	예대금리차	2.70	2.95	중략	7.92	9.93	3.57	9308		
	대출금리	3.53	3.84	ਠਖ	8.55	11.02	5.10	아저		
ΔΔ	예대금리차	2.33	2.64		7.35	9.82	3.90	820점		

[※] 은행2는 신용점수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는 낮으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평균 신용점수↓) 평균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가 은행1에 비해 높음

3. 평균 예대금리차(신설)

은행	구분	'22.1월	'22.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저축성수신금리(A)	1.20	1.70	1.65	1.70	1.74	1.80
	평균 대출금리(B)	2.74	3.25	3.45	3.51	3.50	3.62
	가계대출(C)	2.79	3.66	3.91	3.93	3.98	4.09
	기업대출(D)	2.73	3.14	3.30	3.37	3.39	3.50
	<mark>예대금리차(평균)</mark> (B-A)	1.54	1.55	1.80	1.81	1.76	1.82
	예대금리차(가계) (C-A)	1.59	1.96	2.26	2.23	2.24	2.29

[※]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는 각 은행의 대출종류별 취급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비중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부항목 확인 필요

2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금감원은 '22.2월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예·적금, 가계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체계 및 실제 운영현황을 점검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 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

<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

		as	2대금리						
① 기준	원가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기타							11 1
금리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목표 이익률	부수가래 감면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 (개선방안)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워칙 중심으로 개선

-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 -

- (업무원가)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
 - *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 적용시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
- (리스크프리미엄*)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 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현행) 은행채 → (개선)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 * 리스크프리미엄 = 조달금리 대출 기준금리 (조달금리 과다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 확대)
- (자본비용*) 자본비용 산정시 경영계획상 목표 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
 -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2.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 □ (현황 및 문제점)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며, 기본금리는 ^①시장금리(예: 은행채 1년) 및 ^②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존재*
 - * 기본금리와 달리 우대금리는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 □ (개선방안) 은행별로 月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

< 시장금리 변동시 예금금리 산정 개선 >

현 행	개 선
기본금리 유지, 우대금리 조정	月 1회 이상 점검 후 기본금리 조정
→ 고객별 로 차등 적용	→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

3.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산정 업무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
 - 다만, 은행 내에 금리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개선방안)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예: 준법감시부) 등을통해 年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
 -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
 - * 금리산정내역서 제공, 연체이자율·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변동금리 안내 등
 -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1.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은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 및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중
 - **대출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별도 등록요건(금융 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되어 **서비스가 활성화***
 - * 19개 등록, 14개 영업 중, '21년 중 연간 42.5만건, 6조원 중개
 - 반면,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 곤란
- □ (개선방안)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 *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
 -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 다만,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 검토
 - * 일부 전문가는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거나,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을 유치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부가조건 예시 >

- ①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 * 예: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상품 광고 금지 등
- ②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사상품 및 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 등 의무화
- ③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④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
-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 후 서비스 운영 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 여부 검토

2.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안내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신용정보법 개정('20년) 등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모든 개인은 은행 등에 ^①개인신용평가 주요기준 및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②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청구 및 ^③ 평가 재심사 요구 등이 가능
 - 다만,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은행에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 (개선방안)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
 - (안내대상)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
 - (안내사항)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 행사 방법 →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 가능

※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안내(예시)

- 1. 개인신용평가 결과
 - 평가 기준 시점 : 20○○년 ○월 ○일(가장 최근 등급 평가 일자)
 - 평가 대상 : 대출상품 명 등 기재(계좌번호 :
 -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귀하의 신용등급은 등급중 등급입니다.
- 2.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

구분	정보	내 용	설 명	입수 경로
신상정보	직장	ㅇㅇ건설		
(반영비중 %)	직위	과 장		
거래내용	미상환 대출 총 건수	3건		
판단정보 (반영비중 %))	미해지 신용카드 건수	2건		
신용도	연체 총 건수	1건		
판단정보 (반영비중 %))	미해제 총 연체금액	1,000,000원		

3.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을 의무화하였으나, 은행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소비자**는 요구 수용의 적극성 등을 **거래은행 선택**에 반영하기 어렵고,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
- □ (개선방안)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 감면액)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반기 공시(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4개 업권 공통(각 협회·중앙회)
 - → '22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 예정(8월중)
 -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年 2회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 등)하고,
 - 주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

<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공시항목 >

(단위: 건, 백만원, %)

은 행	구 분	신청건수(A)	수용건수(B)	이자감면액 ²⁾	수용률(B/A)
	가계대출				
	기업대출 ¹⁾				

- 1) 개인사업자대출 포함
- 2) 금리인하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

Ⅲ. 향후 일정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 추진과제별 필요조치 및 향후 일정 >

추 진 과 제	필요조치 및 일정					
1. 금리정보 공시 개선						
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 공시 개선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 즉시 착수					
② 대출금리 공시 개선						
③ 예금금리 공시 개선	기 <u>급</u> 구축 국시 국구					
2.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22.3분기)					
②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별 예금금리 산정 시스템 정비('22.3분기)					
③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22.3분기)					
3.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22.3분기)					
② 개인신용평가 설명·안내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은행별 준비를 거쳐 시행 [*] ('22.4분기)					
③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22.8월중 공시 예정 (세칙개정 旣완료)					

^{*} 개인신용평가 설명 및 안내 강화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22.3분기) 이후 은행별로 지점 전파 및 직원 교육 등 내부준비를 거쳐 시행

참 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산정체계

- □ (예금금리) 다수 은행이 [¹기본금리 + ²우대금리] 체계로 운영 (은행별 명칭은 다소 상이)
 - (기본금리) [시장금리(은행채) 제비용(예보료+지준율+업무원가) ± 조정항목]으로 구성 (통상 ALM위원회* 또는 담당임원(부서장)이 결정)
 - *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 운영 및 조달에 관한 방침 수립, 여·수신 금리 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 (우대금리) 본점 부서가 결정^{*}하는 우대금리와, 영업점에서 부대조건 (급여이체 등) 충족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구분
 - * 본점이 시장금리, 예금조달 수요 등을 감안한 우대범위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고시
- □ (대출금리) [¹대출 기준금리 + ²가산금리 ³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대출금리 모범규준, 은행연합회)
 - (기준금리) 시장금리(은행채, CD)와 COFIX 등 주로 활용
 - (가산금리) 업무원가(인건비·물건비), 리스크프리미엄,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 (**우대금리**) 급여이체, 카드 이용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 * 은행 영업전략에 따라 수시 조정(통상 여신공급을 줄일 때는 축소하고, 늘릴 때는 확대)

<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

	❷가산금리							000077	
0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❸ 우대금리	
기준 금리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목표 이익률	부수 거래 감면 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